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

회의 출석일수 공개 및 청가 등 운영계획

2019. 3

No-43
결재
2019. 03. 08
의장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
(의 사 담 당 관)

회의 출석일수 공개 및 청가 등 운영계획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일수 공개(범위, 주기, 방식) 및 청가서·결석계 제출과 관련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

Ⅰ 관련규정

○ **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제2항**(회의출석의무)

-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, 그 공개 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.(신설 2015.4.2.)

○ **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**(의원의 청가 및 결석)

○ **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**

Ⅱ 운영현황

1. 청가서 및 출석계

○ **서울시의회 현황**(2016년 이후 ~)

구분	청가서	결석계	운영현황
본회의	○ (34건)	×	- 청가서 제출은 3개년 평균 11회 상회, 결석계 제출('18년 1회) 미비 ※ 청가서 제출은 의원별로 전문위원실 경유 신청(공문, 메일)
위원회 회의	△ (10건)	×	-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에 대한 인식 미비(제출 절차 미확립) ※ 청가서 제출 : 10개 상임위중 3개 상임위 10건 ※ 청가 허가 시 의장 통보 사례 없음

○ **타 주요 시·도 사례**(본회의 기준)

구 분	국회	경기	인천	부산	대구	울산	광주	대전
청가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결석계	○	×	×	×	○	○	×	×

2. 누적 출석일수 공개

○ 서울시의회 현황 : 출석의원 및 청가의원 명단 회의록에 게재

- 별도 누적출석일수 공개 없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으로 갈음

※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(회의록)에 따라 출석 의원 성명 등 회의록 기재

- 관련 조례 조항 신설('15.4.2) 후 공개 범위 및 공개 방식 등 후속 조치 사항 부재

⇒ 의장 방침 또는 예규 개정 등을 통해 공개 범위, 주기, 방식 등 마련 필요

○ 타 주요 시·도 사례

구분(의원수)	국회	경기 (142)	인천 (37)	부산 (47)	대구 (30)	울산 (22)	광주 (23)	대전 (22)
출석률 홈페이지 게재	×	×	○	×	×	×	×	×
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	회의록 위치안내	회의록 위치안내	출석률 위치안내	자료취합 제공	자료취합 제공	청구내역 없음	자료취합 제공	청구내역 없음

※ 타 주요 시·도 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」에는 '누적 출석일수 공개' 조항 없음

Ⅲ 세부 추진계획

1. 청가서 및 출석계

○ 청가서(사전) 및 결석계(사후) 제출 세부 기준 마련

- **본회의 청가서** : 의장 허가

청가서 제출 (의원) ⇨ 이메일 또는 상임위 공문 ⇨ 허가 검토 (의장 (의사담당관)) ⇨ 허가통지 ⇨ 허가 : 위원회 불허 : 의원별 (의사담당관) ⇨ 허가사항 기록팀 통보 ⇨ 회의록 기재 (의사담당관 (기록팀))

※ 결석계 제출 : 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

- **위원회 회의 청가서** : 위원장 허가

청가서 제출 (의원) ⇨ 허가 검토 (위원장 (해당 전문위원실)) ⇨ 통보(통지) ⇨ 허가 : 의장통보 (의사담당관) 불허 : 위원통지 (해당 전문위원실) ⇨ 허가사항 기록팀 통보 ⇨ 회의록 기재 (의사담당관 (기록팀))

※ 결석계 제출 : 5일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 → 위원장이 의장에게 통보

2. 누적 출석일수 공개

○ 누적출석일수 공개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

① 공개 범위 · 주기 · 방식

구분	범 위	주 기	방 식
공개사항	본회의, 상임위원회	회기별	시의회 홈페이지 게재

※ 누적출석일수 : 제282회 임시회 이후(제10대의회) 자료부터 공개

※ 공개위치 : 시의회홈페이지 내 “의정활동” 또는 “자료실”에 게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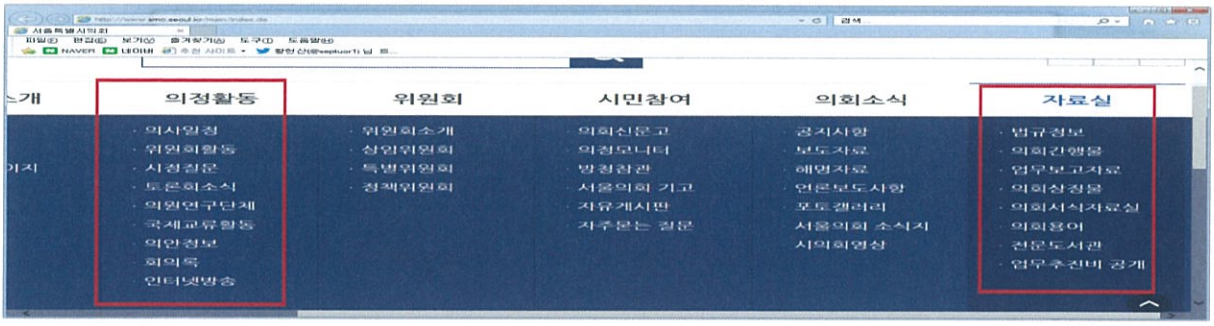

② 공개내역 및 시기

- 내역 : 출결 명단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의원별 누적 출석률만 표출
- 시기 : 단계별 공개(1단계 상반기 의정플러스 내, 2단계 하반기 시의회 홈페이지)
- 공개내역(예시)

의원명	출석내역	본회의	상임위원회			비고
			운영	행정자치	…	
000	출석일수/회의일수	12/12	20/20	16/22		청가서
	출석률	100%	100%	72.7%		6회

※ 청가서 제출 시에는 비고란에 청가서 제출 현황 표기

〈現 전자회의록 출석 관련 기재사항〉

▸ 기재사항 :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, 청가의원 성명 및 수

※ 결석자 명단은 미 기재

▸ 공개방식 : 시의회 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 게재

2019.03.08 의장

○ 의원 출 · 결 확인 방법

- 전자회의시스템 출석 등록을 기준(**※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공통**)
- 전자회의시스템 출석 사항 데이터 추출을 통해 통계 관리

3. 전자회의시스템 개발

○ **의원 출석 등록 기준이 되는 전자회의시스템 내 출석 등록 시스템 고도화**

- 의원 출석 등록 관리자 메뉴 개발 : 의원 출석 등록 현황 최종 확인 · 관리
- 청가 관리 메뉴 개발 : 회의 출석 관리자가 청가 현황 직접 입력(일시, 회차)

※ 청가 신고서는 의원별 별도 제출

- 출석 및 청가 자료 연산(누계) 자료 시스템화(단계별)

※ 1차 : 엑셀 자료 생성(3월한), 2차 API 작업(6월한) 단계별 개발

※ API(Application Program Interface) :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(os),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, 혹은 라이브러리 등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또는 작용하게 하는 수단

○ **시의회홈페이지 의원 회의 출석률 연동 및 공개 창(메뉴) 개발**

- 대시민 공개를 위한 출석률 공개 메뉴 마련

※ 상반기 : 의정플러스 내 내부공개, 하반기 : 디자인 작업을 통해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

Ⅳ 행정사항

○ **전자회의시스템 내 의원 출석 및 청가 메뉴 등 개발 : 의사담당관**

- 관리 및 입력 창, 데이터 관리, 연동 자료 생성 등

※ 제282회 임시회부터 제285회 임시회까지 내역은 수기로 데이터 관리

○ **전자회의시스템 내 출석 및 청가 등록 교육 : 의사담당관**

○ **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및 청가 관리 : 전문위원실**

○ **시의회홈페이지 공개 메뉴 개발 : 언론홍보실**

○ **추진일정**

과제명	3월	4월	5월	6월	7월 이후	부서명
시스템 개발	←(출석등록 시스템 개발, 4.15限)				전자회의시스템 출석관리 시행	의사담당관
교육 및 시범실시	시스템 등 관련 교육 실시		→(제286회부터 시범 실시)			의사담당관
홈페이지 개발	←(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창 개발)				홈페이지 공개	언론홍보실
출석률 공개	제10대 의회 출석률 데이터 작성		→(의정플러스 내 공개)		대 시민공개 (시의회홈페이지)	의사담당관

붙임 1

관 련 자 치 법 규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

제13조(회의출석의무)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개정 2015. 4. 2., 2017. 1. 5.〉

② **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**하도록 하며, **그 공개범위 및 방식** 등은 **의장이 정한다**. 〈신설 2015. 4. 2.〉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

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,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

제2조(**청가서**의 제출)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**청가서**를 **미리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에게 제출**해야 한다.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**청가는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이 허가**한다.

제4조(청가허가의 통지) ①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통보하고,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통지한다.

제7조(**결석계**)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**출석하지 못한 때**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**결석계를 5일 이내에 의장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에게 제출**해야 한다. 단,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.

제8조(출석요구서의 발송) ①의원이 **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**하였을때에는 **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로 출석요구**를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.
② **출석요구**를 받은 후 **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**에는, 이를 **징계**할 수 있다.

붙임 2

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별 출석률 등 공개현황

○ 의원별 출석현황

MENU CONTROL

소통과참여
COMMUNICATION & PARTICIPATION

- 시민의소리
- 시민참여
- 집정
- 행정정보공개
  - 정보공개제도
  - 정보공개편람
  - 이용안내
  - 정보공개청구
  - 업무추진비공개
  - 의회간담회
  - 의원겸직현황
  - 의원별 의정활동 현황
- 의정아카데미
- 의정발전자문위원회
- 의정모니터
- 방청/견학

정책자료실 의안정보 공지사항

홈 > >

의원별 의정활동 현황

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

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| 의원 의안발의 현황 | 시정질문 현황

2018-07-01 ~ 2018-11-20 검색

의원명	회의참석	본회의	상임위원회					
			의회 운영	기획 행정	문화 복지	산업 경제	건설 교통	교육
강원모	참석일수 / 회의일수	12 / 12				22 / 22		
	출석률	100%				100%		
고준수	참석일수 / 회의일수	12 / 12					15 / 16	
	출석률	100%					93.8%	
김강례	참석일수 / 회의일수	12 / 12						15 / 15
	출석률	100%						100%
김국환	참석일수 / 회의일수	12 / 12			24 / 24			
	출석률	100%			100%			
김병기	참석일수 / 회의일수	12 / 12				22 / 22		
	출석률	100%				100%		

2019. 11. 8 의장

○ **청가현황**(의원별 의정활동 하위메뉴)